

국 민 안 전 처

시 정 요 구

제 목 합천 ○○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합천군

내 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급경사지 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급경사지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고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70조에 따라 정비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경상남도 합천군에서는 [표 1]과 같이 합천 ○○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표 1] 합천 ○○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현황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도급업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천 ○○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도로정비 L=620 사면정비 3,444㎡	2,371	1,885.5	1,885.5	2016. 3. 31 ~ 2017.9.30	○○○○○ ○(주) ○○○	

* 자료 : 합천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 1. 19. 시행)」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6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준진흥법」 제62조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소홀

경상남도 합천군은 합천 ○○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장 주변은 차량이 빈번히 교행하는 지방도로써 사고의 위험이 높고, 급경사지 공사 중 사면 절개작업⁷⁷⁾ 성격상 낙석위험 등이 상존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 하여야 하나, 이런 조치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등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합천 ○○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안전관리 소홀 현장 사진

현장 내 안전관리 소홀(1)	현장 내 안전관리 소홀(2)
	

2. 낙석방지 등 안전을 위한 암 파쇄 방호시설 설계보다 적게 설치

77) 현장 확인 결과 사진과 같이 사면절개 작업 중인 현공정이 낙석위험 등이 가장 큰 시기임

합천 ○○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중 NO 20+7.0 ~ NO 24+2.0 구간은 사면 절개 작업 시 발생하는 낙석 등으로 부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암 파쇄 방호 시설을 [표 3]과 같이 설치하도록 설계하였으나, 설계보다 적게 설치하여 낙석 등으로부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고

설계서 보다 적게 설치된 경간설치 사업비 등 차액 16,524천원을 감액하여야 함에도 공사장 지도·감독 등을 소홀히 하여 그대로 방치하였다.

[표 3] NO 20+7.0 ~ NO 24+2.0 구간 설계 암 파쇄 설치현황

구분	설계상	실제 설치 량	과부족	비고
H = 3.0m	L = 8m, 4경간	미설치	L = 8m, 4경간	
H = 4.0m	L = 22m, 11경간	L = 20m, 10경간	L = 2m, 1경간	
H = 6.0m	L = 44m, 22경간	L = 44m, 21경간	1경간	

조치할 사항 합천군수는

○○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에서 과다 계상된 16,524천원을 감액조치하시고,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